

구조용 총포류 관리 기준 등

□ 관련근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지의금지) 제10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가의 제외) 시행령 제12조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줄 발사총을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소지하는 사람
- (화약류의 사용) 제18조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허가의 제외) 제15조 2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

※ 단, 화약류를 폐기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조용 총기류 보유기준

- (보유근거)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일반구조용(중분류) → 총포류(소분류)

소방명칭 (구조장비기준)	로프발사총	마취총	마취용 석궁
일반명칭 (총검단속법)	구명줄 발사총	마취총	석궁(활)
내용연수	10년	10년	10년
보유기준 (대별 1대)	(필수) 일반, 산악 (선택) 수난, 직할	(선택) 일반, 직할	(선택) 일반
용도	로프 전달을 위해 화약 또는 공기압으로 탄두를 발사하여 견인로프를 전달하는 장비	위해 동물포획 시 공압이나 화약으로 마취약제가 내장된 주사체를 발사시켜 동물에 마취약을 주입시키는 장비	위해 동물포획 시 주사체가 부착된 화살을 발사하여 동물에 마취약을 주입시키는 장비
사진			

## □ 구조용 총기류 관리기준

- (관리책임) 구조대(안전센터)별 관리책임자(정부)지정
- (총기보관) 철제캐비닛에 시건하여 보관하거나 출동차량 내 시건장치
- (총기사용) 현장 상황을 판단 후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인명피해 방지
- (안전교육) 총기류 관리사항 등 안전교육(월 1회 이상) 실시

## □ 총포 등 안전관리 수칙

- 총기는 튼튼한 총기격납고나 시정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합니다.  
(법 제47조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 3)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74조제1항제6호)
- 총기 보관·휴대·운반하는 경우에는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방아쇠 당겨 격발), 총집(케이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합니다.(법 제17조제3항)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74조제1항제2호)
- 총기 보관시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부품을 분리 보관하여 도난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지·운반·장전·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17조제2항)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4호)
- 총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법 제21조제5항)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1조 제3호)
- 허가관청에서 실시하는 일제점검을 받아야 하며(법 제42조 제7항), 반드시 검사필증을 부착 휴대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2조 제3호)
- 총기 취급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총기는 항상 장전된 것처럼 취급하여야 하며, 빈총이라도 총구를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됩니다.
  - 음주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총기를 취급해서는 안되며, 총기와 실탄은 반드시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 총기를 임의 변조 또는 개조해서는 안됩니다.(법 제17조제4항)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4호)
  - 총기는 항상 깨끗이 손질해야 하며, 손질시는 장전유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